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우120-1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번지 / 전화 ( 02 ) 3907-323 / FAX 363-5258

문서번호 과장 13300-1716

시행일자 1993. 11. 15

(경유) ( 제 1안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부시장		3
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차장		
업무부장		법무담당관
과장/과장		한 상안

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

1. 상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 제 2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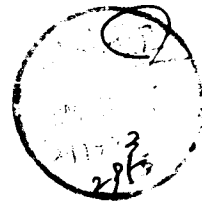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보관

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개정안을 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 공 고 (안)

1993년 11월 26일	11월 26일	11월 26일
장관	시장	시장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 서울특별시공고 제 93-295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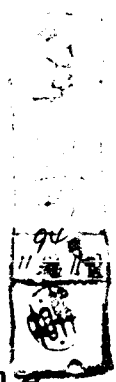
### 1. 개정 취지

상수도요금등이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함으로 상수도사업의 재정 상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 요금수준보다도 월등히 낮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바,

상수도요금등을 조정하여 생산원가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 보전하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좋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2. 주요 내용



가. 급수사용료 요율조정

구분 업종	1개월 기본요금		초과사용료	
	기본수량 (세제곱미터)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원)
가정용	10	1,230	11~ 30	180
			31~ 50	230
			51이상	300
영업용1종	20	4,500	21~ 50	350
			51~ 100	380
			101~ 300	430
			301이상	500
영업용2종	30	11,200	31~ 50	470
			51~ 100	550
			101~ 200	650
			201~ 300	770
			301이상	850
옥탕용1종	500	95,000	501-1,000	210
			1,001-2,000	240
			2,001-3,000	290
			3,001이상	330
옥탕용2종	200	100,000	201~ 500	850
			501-1,000	900
			1,001-2,000	1,000
			2,001-3,000	1,030
			3,001이상	1,050
공공용	30	5,000	31이상	300



나. 급수관손료 조정

구경 별	요 금	비 고
13 m/m	1개월 370 원	
20 m/m	1개월 680 원	
25 m/m	1개월 940 원	
40 m/m	1개월 2,530 원	
50 m/m	1개월 4,390 원	
75 m/m	1개월 6,260 원	
100 m/m	1개월 9,800 원	
150 m/m	1개월 19,600 원	
200 m/m	1개월 30,200 원	
250 m/m	1개월 45,400 원	
300 m/m	1개월 76,800 원	
350 m/m	1개월 106,000 원	
400 m/m	1개월 113,000 원	



\* 구경은 계량기 구경을 기준한다

다. 시설분담금 조정

구 분	시 설 분 담 금	
	신 설	개 조
내경 13 m/m	132,000 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내경 20 m/m	383,000 원	
내경 25 m/m	680,000 원	
내경 40 m/m	2,360,000 원	
내경 50 m/m	3,330,000 원	
내경 75 m/m	6,910,000 원	
내경 100 m/m	11,790,000 원	
내경 150 m/m	25,680,000 원	
내경 200 m/m	36,500,000 원	
내경 250 m/m	49,200,000 원	
내경 300 m/m	57,800,000 원	
내경 350 m/m	78,200,000 원	
내경 400 m/m	84,500,000 원	시장



\* 내경구분은 계량기 구경을 기준한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상수  
도사업본부 업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의견

